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11. 24.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비 고
유*완 외 2명	붙임 참조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100,000원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 20% 감경

3.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9.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2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할 예정 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940-4152)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1	유*완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	폐문부재
2	이*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 **-***	폐문부재
3	전*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 **-***	폐문부재